붙임 **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이 유
제1조 ~ 제22조 (생략)	**제1조 ~ 제22조** (현행과 같음)	
제23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② (생략) ③ (생략) 1.~5. (생략)	**제23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)**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~5. (현행과 같음) 6.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·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·조치 (신설) 7. 감독(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"감독"을 말한다) 및 검사(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"검사"를 말한다)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(신설)	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(점검·조치 업무, 후속조치 관리 업무)
6.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	8.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	
제32조(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) ① (생략) ② 회사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	**제32조(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)** ① (생략) ② 회사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~~매년~~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	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(성과보상체계 사전합의권)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이 유
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기 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.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확인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. ④ ~ ⑥ (생략) **부칙** **제1조(시행일)** (신설)	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.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합의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, 성과평가지표(KPI)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체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 **부칙** **제1조(시행일)** 이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(성과보상체계 개선요구권)